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3. 제안이유

-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
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3
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허가관청(시장·군수)이 정하도록
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.

4. 주요골자

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.

5. 검토의견

부동산중개업법 구법에서 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
나 당해 법률의 개정예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허가 관청(시장·군수)이 하게 됨에 따
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